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성과와 과제 세미나

일 시 12/10(화) 오전 10:00

장 소 이룸센터 누리홀



사단
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FDO Korea Federation of Disability Organizations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성과와 과제 세미나

일 시 12/10(화) 오전 10:00

장 소 이룸센터 누리홀





목 차



〈조사 결과 발표〉

-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운영 및 환경점검 결과 5
 - 김나영 본부장(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 ‘202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의미 : 거주인 인권실태 13
 - 이호선 외래교수(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종합 성과와 과제 29
 -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제 발표〉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현장의 변화 47
 - 한은희 전문상담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
- ‘202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참여 경험과 고민 55
 - 김종미 사무처장(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2024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진행 사례 63
 - 정한별 팀장(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 인권과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역할 71
 - 김강원 부센터장(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김영일, 고선순, 진건, 최공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뜻깊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 단위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 조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환경과 운영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피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조사팀장, 민간 조사원, 전담공무원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유형의 거주시설과 거주인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3개년의 종합분석 연구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히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의견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김영일, 고선순, 진건, 최공열

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운영 및 환경점검 결과

김나영 본부장

(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운영 및 환경점검 결과

김나영 본부장(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1. 시설운영 및 환경점검 조사 영역의 변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3개년 종합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에서 보건복지부의 시설평가나 지자체의 지도점검 내용과 중복되므로 거주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가 피로도를 느끼고 있으며, 피로도와 반복된 질문으로 인한 학습효과를 꾸준히 지적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운영 및 환경점검은 2023년의 점검 항목과 달리 보건복지부의 시설평가, 지자체 지도점검 내용과 중복되는 문항은 제외하였다.

〈표 5〉 조사 주제 및 내용

구분	내용
시설운영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지킴이단 • 학대 등 신고 • 고충함 및 진정함 설치 등 • 금전관리 • 의약품 관리 • 후견인지정 • 보육·교육기관 유형별 재학(재원) • 프라이버시 침해 • 자립지원팀 운영
시설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외부환경과 주 출입구 • 침실 • 화장실 • 목욕탕 • 침실욕실화장실 내 cctv • 공용공간



2. 시설운영 및 환경점검 조사 결과 요약

시설환경 및 운영점검 조사는 장애영유아거주시설 2곳,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곳, 총 84개소가 참여하였다. 이에 따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가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외부단원 충족률을 지키지 않는 등 인권지킴이단의 구성과 운영에 한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조사 시설 84개소 중 2개소(2.4%)는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있지 않았다. 인권지킴이단이 구성된 시설 중 외부단원이 50% 이상 위촉되지 않은 시설은 7개소(8.6%)로 나타났다.

둘째, 거주인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 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시설 84개소 중 14개소(16.7%)는 진정함만 설치되어 있었고, 1개소는 진정함과 함께 비치되어야 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 등이 없었으며 13개소(15.5%)는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주인의 금전관리에 대한 조사는 84개소 중 3개소(3.6%)는 거주인에게 자산관리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며, 사전 동의서를 받은 시설 중 9개소(11.3%)에서 금전관리 위임장 필체가 획일적이거나 서명 누락, 도장이나 지장으로 대체하는 등 거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전관리 관련 수임자의 퇴직 시 다른 수임자로 지정되지 않는 시설이 14개소(18.2%)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약품을 안전하게 취급·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 개인별로 구분·보관해야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 의약품 보관함이 없거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82개소 중 1개소(1.2%)는 약품 보관함이 존재하지 않았고 4개소(4.9%)가 약품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없었으며 6개소(7.6%)는 잠금장치는 있으나 열려 있었다. 또한 3개소(3.7%)가 처방약을 개인별로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다섯째, 많은 시설에서 후견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성년후견인은 조사된 82개소 중 60개소(73.2%), 피한정후견인은 82개소 중 79개소(96.3%), 피성년후견인은 82개소 중 67개소(81.7%)가 후견인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미성년후견인은 조사된 13개소에서 총 35명이 무연고이나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미성년 거주인 대부분이 통합교육보다 분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84개소 중 보육·교육지원이 필요한 거주인 중 54.1%가 장애영유아 전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특수학교에서 보육·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조사한 시설 중 20개소(24.4%)가 시설 홈페이지 및 리플렛 등에 거주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내용이 있어 개인정보동의서를 사전에 받는 등 거주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입소자의 자립계획 및 퇴소 후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는 자립지원팀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조사된 84개소 중 40개소(47.6%)만이 자립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운영하더라도 자립지원팀 구성원이 1명 이하인 경우도 4개소(5.6%)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홉째, 시설 외부환경과 주 출입구가 거주인 이용이 용이한지, 위험발생 요인은 없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82개소 중 14개소에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출입구 경사로는 72개소에 경사도가 모두 설치, 7개소는 50% 이상, 1개소는 50% 미만 설치, 나머지 3개소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관 주출입문을 거주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77개소, 그렇지 못한 시설은 7개소로 나타났다.

열째, 거주인의 침실의 청결 정도와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결 정도는 조사 시설 모두 보통 이상이었으며, 침실 내 불필요한 물건을 적치한 시설은 2개소(2.6%)로 나타났다. 반면, 침실 내 개인사물함은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구비되어 있었으나 조사 시설 중 17개소(20.2%)가 밖에서 침실 안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였으며, 5개소(6.0%)가 침실의 잠금장치를 외부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한째, 거주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편의시설 설치 여부, 청결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화장실의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만 구분된 시설이 2개소(4.8%), 화장실 문 잠금장치가 없거나, 외부에 있는 시설이 10개소(11.9%)로 나타났다. 또한, 바깥에서 화장실 내부를 볼 수 있는 시설이 3개소(3.6%)로 일부 시설에서 거주인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여부는 조사된 84개소 중 모두 설치된 시설은 53개소, 별도의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존재하는 곳은 7개소이며, 6개소는 화장실 내부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시설별 청결 여부는 대부분의 시설이 보통 이상이었으나 1개소는 청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두째, 거주인이 이용하는 목욕탕의 남녀 구분 여부,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

분의 시설이 남녀 구분이 되어 있으나 11개소(13.1%)는 일부 혹은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는 조사된 84개소 중 48개소였고, 목욕탕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곳은 8개소로 조사되어 목욕탕 내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셋째, 화장실 또는 목욕탕에 비상벨 등 설치가 미비하여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벨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조사 결과, 화장실은 조사된 84개소 중 36개소(42.9%)만 모두 설치, 목욕탕은 조사된 83개소 중 32개소(38.6%)만이 비상벨을 모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또는 목욕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벨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열넷째, 침실, 욕실, 화장실에 CCTV 설치로 거주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받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실, 욕실, 화장실 내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서 2개소(2.4%)가 시설내 침실, 욕실, 화장실 내부에 CCTV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다섯째, 거주인들이 생활하는 공용 공간에 거주인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TV, 컴퓨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시설 내 TV가 없는 곳은 2개소(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개소,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개소)로 나타났으며, 컴퓨터가 없는 곳은 39개소(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개소,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38개소)로 나타났다. TV는 평균 2.5대, 컴퓨터는 1.4대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2024년 조사에 따른 합의

첫째,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거주인의 고충 해소 및 진정권 보장을 위해 고충함 및 진정함은 거주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거주인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금전관리 위임장 필체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 금전관리에 관해 거주인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 등은 장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거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조력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거주인의 선호와 희망에 따라 의사결정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미성년 거주인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거주인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사회통합의 기초로서 통합교육이 지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거주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입소자의 자립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지원하고 퇴소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일곱째, 화장실 또는 목욕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벨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여덟째, 침실, 화장실, 욕실 등 사적 공간을 포함한 시설 내 공간에서 거주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설 구조 및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 발표

**‘202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의미 :
거주인 인권실태**

이호선 외래교수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2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의미 : 거주인 인권실태

이호선 외래교수(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1. 거주인 조사 결과 요약 및 함의

1) 거주인 조사 결과 요약

거주인 조사는 영유아 22명, 아동·청소년 328명, 성인 1,775명, 총 2,125명이 참여하였다. 이에 따른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 입소기간이 12년 정도로 입소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2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7.2%,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13.1%로 나타났다. 즉,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67.9%로 거주인의 2/3 이상인 수준이다.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전체의 13.2%에 해당한다. 한번 입소하면 지속적으로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현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고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족의 부담에 의해 시설 입소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고자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연고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3.5%로 연고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16.5%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설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소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22.8%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의사소통이 어려워 설문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체건강, 청결 상태 등을 확인했는데, 약 6% 정도는 건강, 청결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인의 신체 건강을 확인한 결과 6.1% 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머리, 몸, 치아 등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는 5.3%로 확인되었다.

넷째,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개월 수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20.8%에 이르렀고, 개월 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도 4.8%였다. 또 심화평가를 권고받은 7명 중 3명은 추가 점진 여부를 모르는 상황이었다.

다섯째,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었다. 좋아하는 음식을 시설에서 먹을 수 없다는 응답은 9.7%였고, 방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싫어하거나 서로 다투게 되어도 그 사람이나 방을 바꿀 수 없다는 응답은 10.9%였다. 또 공용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직원이 허락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2.4%로 나타나고, 또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잠을 잘 수 없다는 응답도 7.5%에 이르는 등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되고 있었다. 시설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 외출할 수 없다는 응답도 19.1%였고, 친구나 가족 등이 시설에 와서 원할 때 함께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응답도 3.4%였다. 거주인 중 전화나 휴대폰을 원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2.5%였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응답도 1.8%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휴대폰이나 이메일, 편지, 소포(택배) 등을 시설장이나 직원이 검사한다는 응답은 26.8%, 나에게 원하는지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검사한다는 응답은 8.9%로, 사생활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아동·청소년 거주인은 낮 활동으로 TV 시청이나 게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1.1%), 여러 프로그램은 시설 외부(4.4%)보다는 시설 내부에서(11.2%) 진행되고 있었다. 성인의 경우에도 TV 시청이나 게임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 내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는 1.8%로 매우 미흡하게 나타났다.

일곱째,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자기결정, 자기권리 옹호 능력 향상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이 시설 내에서나 지역에서 의사소통, 자기결정, 자기권리 옹호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12.8%, 17.4%, 12.3%였다. 결국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때 투표 전 시설직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은 4.9%였고, 특정인에게 투표하라고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0.9%였다.

아홉째, 거주인의 권리에 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불편 사항이나 불만이 있을 경우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30.7%에 이르고 있었음에도, 현재 거주시설에서 거주인의 권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2.6%에 불과했다. 특히 시설에서 다른 거주인이나 응



답자 본인이 학대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은 13.2%였다.

열 번째, 거주인의 상당 수가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인에게 1년 이상 계속 먹는 약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지속해서 복용하는 약이 있다는 응답이 45.9%였으며, 복용 약이 없다는 응답은 18.4%였다. 두 개 범주의 응답만으로 재분석하면, 지속해서 복용하는 약이 있다는 응답이 71.4%였고, 복용 약이 없다는 응답은 28.6%였다. 즉 거주인 10명 중 7명은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한 번째, 의료 미충족율이 높았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7.0%였다. 의사소통 불가 답변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11.7%이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도 5.3%였고, 의사소통 불가 답변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9.7%이다.

열두 번째, 학대와 폭력(뒷부분 3. 거주인과 직원 조사 비교 참고)

열세 번째, 열 네 번째 탈시설 자립생활(뒷부분 3. 거주인과 직원 조사 비교 참고)

2) 거주인 조사 결과 함의

첫째, 거주시설에서의 장기 입소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평균 입소기간이 12년 정도로 긴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 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67.9%로 거주인의 2/3 이상인 수준이다. 즉 한번 입소하면 지속적으로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현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주시설에서의 장기 거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즉 탈시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영유아 예방접종, 건강검진, 재검사에 의한 정밀검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월수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20.8%에 이르렀고, 개월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도 4.8%였다. 또 심화평가를 권고받은 7명 중 3명은 추가 검진 여부를 모르는 상황이었다. 영유아 예방접종, 건강검진은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접종, 건강검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낮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낮 시간 동안 주로 무엇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 연령에 상관없이 TV 시청이나 게임 등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많았다. 여가를 위해 TV 시청이나 게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활동이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 지역사회에서의 낮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자기결정, 자기권리 옹호 능력 향상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이 시설 내에서나 지역에서 의사소통, 자기결정, 자기권리 옹호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12.8%, 17.4%, 12.3%였다. 결국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 자기결정, 자기옹호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부(학교 숙제)를 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시설에 없다는 응답도 9.5%에 이르렀다. 예와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만으로 다시 분석하면 책상과 의자가 없는 경우는 14.4%이다. 또 공부(학교 숙제)를 하거나 수업 준비물을 준비할 때 시설에서 도와주는 직원이 없다는 응답도 4.0%였고, 예와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만으로 다시 분석하면 도와주는 직원이 없는 경우가 7.5%이다. 즉 아동·청소년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원인이 부족한 것이고, 이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좋아하는 음식을 시설에서 먹을 수 없었고(9.7%), 방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싫어하거나 서로 다투게 되어도 그 사람이나 방을 바꿀 수 없었다(10.9%). 또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잠을 잘 수 없었고(7.5%), 시설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 외출할 수도 없었다(19.1%). 전화나 휴대폰을 원할 때 사용할 수 없었고(12.5%),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고(1.8%), 아동과 청소년의 휴대폰이나 이메일, 편지, 소포(택배) 등을 시설장이나 직원이 마음대로 검사하고 있는(8.9%) 등 개인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실천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당사자에게 자신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편 사항이나 불만이 있을 경우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30.7%에 이르고 있었음에도, 현재 거주시설에서 거주인의 권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2.6%에 불과했다. 특히 시설에서 다른 거주인이나 응답자 본인이 학대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은 13.2%였다. 이처럼 거주인의 권리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자신의 권리를 말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자신의 권리에 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미충족율이 11.7%였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도 9.7%였



다. 거주시설의 존재 이유로 의료적 욕구가 높은 장애인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주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의료보장이 잘 안 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의료보장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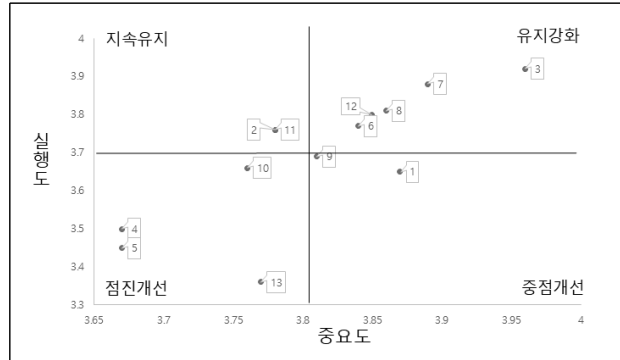
아홉째, 학대와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강제노역 1.5%, 언어폭력 6.9%, 신체적 폭력 5.5%, 격리·감금 2.8%, 방임 2.3%, 성폭력 1.9%, 강제 약물 복용 0.9% 등 학대와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학대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학대는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보다 강력한 정책, 실효적 정책이 필요하다.

열 번째, 거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자립생활 욕구 조사를 강화하고, 자립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별 계획에 따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자립생활 욕구가 있는 사람은 26.8%였다. 하지만 자립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33.7%로 적은 수준이었고, 자립할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33.9%였다. 또 시설에서의 탈시설 욕구조사,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계획 진행 등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상당히 부족했다. 탈시설 자립생활 욕구 조사를 한 경우는 14.9%였고, 시설에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세운 경우는 24.6%였고, 자립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 자립 준비 과정이 진행된 경우는 22.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시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생활 욕구를 실시하고,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2. 직원 조사결과 요약 및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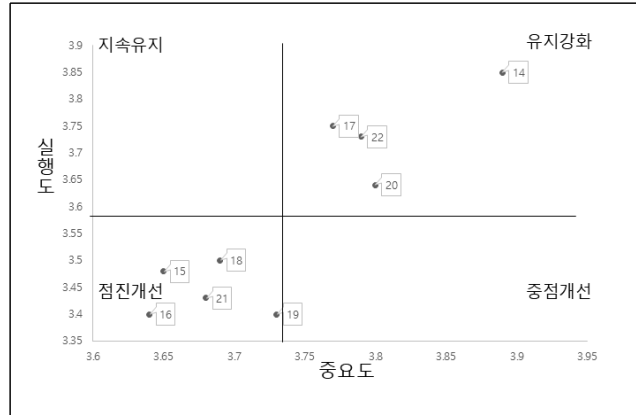
직원 조사 결과 요약과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직원의 의견에 따른 중요도와 실행도를 살펴본 결과, 공통영역에서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는 낮아 '중점개선'해야 할 영역은 '개인별 연령, 장애특성, 질병, 알러지 등을 고려한 식사메뉴를 제공한다'와 '거주인의 의견과 선호를 반영시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로 나타났다.



1.개인별 연령, 장애특성, 질병, 알리지 등을 고려한 식사메뉴를 제공한다 / 2.친구나 가족이 시설에 방문하여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 3.필요 시 적절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한다 /4.최대한 금전관리를 본인이 하도록 지원한다 /5.의사소통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나 인적지원을 한다 / 6. 활동 이동을 위한 보조기 등을 지원한다 / 7.모의대피훈련에 거주인을 참여시킨다 / 8.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한다 / 9.거주인의 의견과 선호를 반영시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 10.일정 및 일과를 사전에 거주인에게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안내한다 /11.투표참여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방법을 설명한다 / 12.거주인 대상의 권리교육을 진행한다 /13.장애특성에 맞춘 공간을 제공한다

한편 공통 항목에 비하여 아동·청소년 항목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나,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관심과 지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아동·청소년 영역에서는 '중점개선'해야 할 영역은 없었으며, 중요도와 실행도가 낮은 '점진개선'영역의 책상과 의자, 컴퓨터·도서·학용품, 놀이공간, 성인과 구분된 프로그램, 혼자 있을 장소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아동·청소년에게 특히 강조되는 발달권과 사생활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14.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5.공부할 책상과 의자를 구비하고 있다 / 16.학생수, 연령, 장애 특성을 고려한 컴퓨터, 도서, 학용품 등을 구비하고 있다 / 17.학교에 다니는 거주인의 공부, 숙제, 수업 준비물 준비 등을 지원한다 / 18.성인과 구분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19.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만 있을 장소를 제공한다 / 20.의사소통, 자기결정능력, 자기권리 옹호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시설에서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를 지원한다 / 21.놀이 공간을 시설에서 구비하고 있거나 지역사회 놀이 공간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 22.공연관람, 문화활동 체험 등을 지원한다

둘째, 거주인마다 외출 실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거주인의 자기결정 수준에 '외출과 외박'은 3.68점(4점 척도)으로 점수가 높은 항목 중 하나였다. 또한 1주일에 최소 외출일은 평균 3.7일과 최대 외출일은 평균 3.8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출일이 최소 주당 하루도 없는 경우도 5.6%를 차지하였으며, 1주일에 최대 외출일이 주당 하루인 경우는 13.4%, 외출일이 없는 경우도 0.5%를 차지하였다. 지난 한달 동안 통원 목적을 제외하고 외출하지 않은 거주인이 있다는 응답은 16.6%였으며, 그 거주인 수는 평균 2.02명이었다. 1명에서 5명이 63.2%, 6명에서 10명이 21.4%, 11명에서 30명이 3.5%에 이른다. 즉,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거주인의 외출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있고 목적에도 차이가 있어 형평성 있는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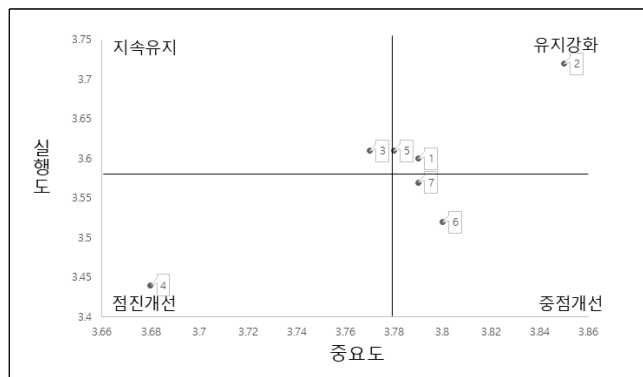
셋째, 거주인의 자유로운 결정 수준을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각 항목의 평균점수는 최소 3.12점에서 최대 3.87점으로 차이가 있었다(4점 척도, 평균 3.53점). 그중 높은 점수의 5개 항목은 '투표활동 참여 및 특정 후보 강요 없음(3.87점)', '종교활동 참여 및 특정 종교 강요 없음(3.81점)', '원하는 옷과 신발 구매(3.69점)', '외출과 외박(3.68점)', 'TV, 컴퓨터, 라디

오 등 사용(3.67점)’이었다. 이와 달리, 하위 점수의 5개 항목은 ‘이성교제와 결혼’이 3.1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룸메이트 선택(3.3점)’, ‘식사 시간 선택(식사 시간 외 식사 가능)(3.31점)’, ‘방(침실) 꾸미기(3.31점)’, ‘식사 메뉴 선택(3.34점)’이었다.

한편, 사생활 보장과 관련하여 가장 낮게 평가된 항목은 ‘휴대폰, 이메일, 택배 등 검사(확인)하지 않는다(3.69점)’이었고, ‘방(침실)은 외부인이 방문 전에 거주인의 동의를 받는다(3.72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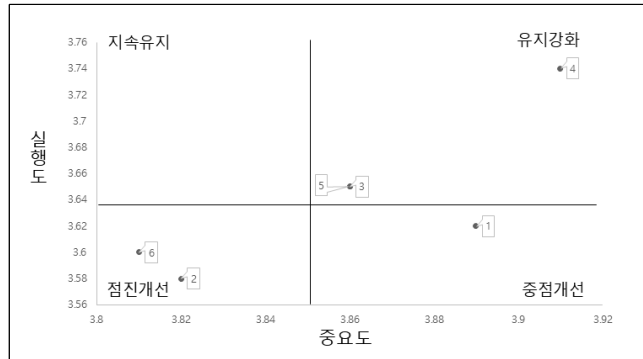
넷째, 자기결정 지원 관련한 직원의 경험과 인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선호에 반하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5%였으며, 그 이유로 ‘거주인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라는 응답이 59.9%에 해당하였다. 거주인의 건강과 안전은 중요하지만, 건강과 안전만을 위하여 자기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거주인의 자기결정 보장과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직원의 의견에 따르면,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가 낮아 ‘중점개선’해야 할 영역은 ‘이용자에게 맞는 의사소통 도구 지원과 직원에게 의사소통역량 강화 교육 지원’와 ‘시설 내 자원 뿐만 아니라 외부 자원 연계와 협력’에 해당하였다.



1. 식사, 프로그램 등 다양화를 통한 선택권 확보 / 2. 거주인의 의견을 말할 기회 제공, 거주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설 운영 규칙 마련 / 3.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에 거주인이 평가에 참여하여 개선하는 활동 마련 / 4. 거주인이나 다른 동료의 경험 공유나 상의할 기회나 프로그램 마련(자조모임, 동료상담 등) / 5. 거주인의 자기결정을 보장을 강조하는 시설규정 마련 / 6. 이용자에게 맞는 의사소통 도구 지원과 직원에게 의사소통역량 강화 교육 지원 / 7. 시설 내 자원 뿐만 아니라 외부 자원 연계와 협력

또한 직접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가 낮아서 '중점개선'해야 할 영역은 '1. 거주인의 의사를 독촉하지 않고, 경청하며, 정확히 파악하기'에 해당하였다. 자기결정을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점이므로 더욱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1. 거주인의 의사를 독촉하지 않고, 경청하며, 정확히 파악하기 / 2. 거주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기 / 3. 거주인에게 연령, 장애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 4. 거주인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 5. 거주인의 취향과 행동파악 등을 위하여 보호자와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 6. 시설에서의 자기결정 매뉴얼을 준수하기

다섯째, 이번 실태조사에서 새롭게 들어간 주제인 도전 행동과 관련한 주요 실태와 인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주인에게 도전행동이 있다는 응답이 77.7%였다. 직원들은 거주인의 도전행동 발생 원인을 환경적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기질적 특성이나 개인의 성격·성향 등으로 보는 응답은 42.5%에 해당하였다.

한편, 도전행동에 대응하는 방식은 1순위로 '지속적으로 개별사례관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반면 타임아웃, 약물치료, 신체적 제재, 행동과 이동의 제재, 장비 사용 제지와 같은 자유권을 제한하거나 문제 가능성이 있는 방식도 9.6%에 달하였다. 도전행동에 관한 전략에 대하여 도전행동에 대한 계획 수립, 관련 매뉴얼, 대응 역량 훈련, 동의, 기록 등 각각의 응답 비율은 다중 응답임에도 최대치가 20%에 미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전략이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전행동으로 인한 신체적 개입 경험이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50%로 나타났는데, 신체적 개입이 거주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임에도, 신체적 개입 실시 이유

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중재방법을 몰라서 수행’하거나 ‘다른 행동 중 재방법을 알아도 자신이 없어서 수행’한다는 등의 응답률이 총 15.2%에 달하였다. 또 도전행동으로 인하여 약물치료가 병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58.7%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전행동으로 인한 약물 투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은(60.3%)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직원(22.6%)에 비해 2.6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전행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도전행동 지원에 관한 직원 교육 실시(27.0%)’, ‘도전행동 관련 원칙과 개입방향을 제시하는 법과 지침 마련(19.3%)’, ‘도전행동 지원을 위한 숙련된 전문가 양성(12.7%)’ 등이었다.

여섯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응답은 7.4%였으며, 언어폭력(39.5%), 신체적 폭력(37.2%), 성폭력(8.5%), 방임과 유기(3.9%), 강제 약물 투여(0.8%) 등의 순이었다. 행위자는 언어폭력의 경우 거주인(80.2%), 직원(14.9%)이었으며, 신체적 폭력의 경우 거주인(85.0%), 직원(11.2%), 사회복지무원(1.9%)이었고, 방임의 경우 직원(54.5%), 시설장(31.8%)이었으며, 성적학대의 경우 직원(50.0%), 거주인(41.7%)이었다. 즉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거주인 행위자 비율이 높았고, 방임, 성폭력은 직원의 행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인권침해 발생 시 주로 조치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기존 실태조사와는 다른 특이점을 나타냈다. ‘이해당사자들끼리 합의하도록 했다’가 33.0%로 가장 많았고, ‘인권지킴이단에 인권침해 사실을 알린 후 조치를 취했다’가 18.6%,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다’가 11.3%로 나타났다. ‘법인이나 시설장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처벌을 일임했다’가 7.2%였다. 즉, 내부 기관 내에서 합의나 처벌 등으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40.2%에 달하였다. 기존의 3년간 실태조사에서는 권익옹호기관 등에 조사의뢰나 인권지킴이단에 알리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해당사자들끼리 합의는 2.0%~5.1%로 낮은 비율이었다. 이는 앞서 폭력 유형의 행위자로 거주인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경향이나 상대적으로 소형 거주시설의 특성 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인권침해 상황이 내부적으로 해결되는 비율이 40.2%로 높다는 점은 인권침해를 축소하거나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일곱째,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자립의사 조사는 시설 자체든 외부기관이든 64.5%에 달하였다. 자립조사 결과로 ‘자립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응답이 76.5%였으나, ‘자립을 원했지만,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는 응답도 5.5%로 나타났다.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후 63.1%가 준비 차원



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실질적인 자립 진행 과정도 31.4%였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는 응답도 1.6%에 해당하였다. 관련하여 2023년 1월 이후 실제 시설에서 자립을 지원하여 퇴소한 거주인이 있다는 응답률은 25.2%였으며, 평균 1.54명이었다. 63.4%가 1명 정도 퇴소하였다고 밝혔다. 또 퇴소의사가 있음에도 자립에 어려움이 있는 거주인이 있다는 응답이 3.6%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자립의사 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인원은 아직 소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설에서 거주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 제공서비스의 1순위가 '은행, 주민 센터, 마트, 영화관 등 지역사회 자원 이용 경험 쌓기'였다. 그런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직원이 생각하는 서비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거절하기 등 의사소통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교육'으로 괴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와 도움이 될 서비스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자립생활센터 등과 연계한 단기체험 이용'을 들 수 있다. 현실에는 1.7% 응답률을 보였으나, 도움이 될 것에는 7.2% 응답률을 보인다. 실질적으로 거주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이 정확하게 조사되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에 관한 직원의 인식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적용 대상에 관하여, 모든 거주인이 아닌 특정 조건의 거주인만이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는 직원이 16.3%~23.7% 정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자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특성으로 기능상 중증장애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질병으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장애인, 도전적 행동이 심한 장애인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거주인에 국한하여 자립을 지원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자립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직원도 18.8%로 나타났다. 또한 자립생활의 거주형태에 대하여 그룹홈(30.7%), 개별주택(27.3%)이 높았으나, 현재와 유사한 소규모 시설의 형태인 30인 미만의 소규모 거주시설에 동의도 24.8%에 달하였다. 이 문항에 동의한 직원은 자립의 필요성에 적극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3. 거주인 조사와 직원 조사 비교

2024년 조사에서는 학대 조사 부분과 자립생활 관련 조사 부분이 중복되어 이 두 영역에서 두 집단 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1) 폭력과 학대

학대 발생 실태와 관련하여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거주인들이 경험했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다.

〈표 1〉 폭력과 학대 비교

구분	거주인	직원
인권침해 전반	• -	• 인권침해 발생: 7.4%
강제노역	• 강제노역: 1.5%	• 강제노역: 0.2%
언어폭력	• 언어폭력: 6.9%	• 언어폭력: 8.0%
신체적 폭력	• 신체적 폭력: 5.5%	• 신체적 폭력: 8.3%
감금·격리	• 격리·감금: 2.8%	• 신체격리·구속: 0.1%
방임	• 방임: 2.3%	• 방임: 1.7%
강제 약물복용	• 강제 약물복용: 0.9%	• 약물오남용: 0.2%
성폭력	• 성폭력: 1.9%	• 성적 학대: 1.0%
경제적 착취	• -	• 금전유용: 0.4%
대처, 보장방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권리교육 미제공: 10.3% • 인권침해 대처방법 인지 못함: 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처방법: 이해당사자 간 합의(33.0%), 인권지킴이단 활용(18.6%),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의뢰(11.3%), 법인이나 시설 장애 위임(7.2%) 등 • 인권보장 방안: '시설환경 개선과 재활·자립 프로그램 내실화'(35.4%), '직원의 인권교육 강화'(26.5%), '거주인의 인권교육 강화'(13.7%) 등



2)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거주인과 직원 간의 인식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거주인이 퇴소 의사가 있지만 퇴소를 하지 못하는 비율이 3.6%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거주인 당사자들은 자립생활 욕구가 26.8%에 이르지만 퇴소를 못하고 있었다. 탈시설을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어떻게 자립할지 방법을 몰라서 15.9%,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이 두려워서 15.9%, 가족들이 시설에 계속 사는 것을 원해서 14.4%, 경제적으로 자립할 자금이 없어서 9.1%, 시설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5.1% 등 경험 부족에 의한 자신감 부족, 관련 지식 부족 등이 원인이었다. 특히 자립생활 자체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25.3%에 이르렀다. 또 직원은 자립의사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5.5%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거주인들은 31.6%가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직원 중 76.5%가 거주인의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했지만, 거주인은 24.6%만이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계획 수립이후 구체적인 진행이 없었다는 응답은 직원이 1.6%였지만 거주인은 11.0%에 이르렀다. 또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두 집단 비슷하게 응답했으나, 거주인 중 18.1%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를 모르고 있었다.

〈표 2〉 지역사회 자립생활 비교

구분	거주인	직원
탈시설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생활 인지 33.7%, 미인지 25.3% 탈시설 자립생활 욕구 26.8%, 미욕구 29.4% 오랫동안 욕구에도 시도 못한 이유: 어떻게 자립할지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15.9%,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이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15.9%, 가족들이 시설에 계속 사는 것을 원해서 14.4%, 경제적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어서 9.1%, 시설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5.1%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소 의사가 있지만 퇴소를 하지 못하는 거주인: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에서의 탈시설 욕구 조사 실시 14.9%, 미실시 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의사 조사 : 자체 47.4%, 외부 조사 17.1%, 없음 5.5%
계획 수립 및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24.6% 계획 수립 후 진행 22.1%, 구체적으로 진행 없음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76.5% 자립체험·교육 등 자립 준비 과정 (31.8%), 구체적인 의향·욕구 조사 (31.3%), 전환 지원 준비(16.9%), 전환계획서·동의서(14.5%), 구체적 진행 없음(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모름: 18.1% 시설에서 제공받은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이용 경험 쌓기(11.5%), 자립생활 기술훈련(9.2%), 자립에 대한 설명(교육)(7.4%), 직업재활 훈련(6.6%), 돈을 관리하는 방법 교육(6.2%), 시설직원이 진행하는 자립욕구와 역량 확인 및 심리적인 상담(4.5%)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1순위): 지역사회 자원 이용 경험 쌓기(17.5%), 자립생활 기술 훈련(14.4%), 시설직원과의 상담 (12.1%), 자립교육(11.1%), 체험 홈 이용(9.1%) 등

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종합 성과와 과제

이동석 교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종합 성과와 과제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4년 동안 이루어진 인권실태조사의 성과 및 한계

1) 인권실태조사의 성과를 일정 정도 확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생활하는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인권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설운영자 등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인권실태조사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원 면접 등을 통해 인권상황 모니터링과 시설 종사자 및 운영자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 조사 결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첫째, 지속적인 조사로 종사자가 긴장감을 가지게 되고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학대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 조사내용을 통해 인권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 비슷한 조사결과 경향으로 인한 실태조사 필요성 저하

4년 동안의 실태조사결과는 매년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고, 이로 인해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하는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었다. 2021년에는 100인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2022년에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 유형별 시설 및 영유아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2023년에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2024년도에는 소규모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등 매년 다른 형태의 다양한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실태조사결과는 매년 비슷하게 나타났다. 거주시설 유형별로 일부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에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매년 비슷한 문항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학습효과에 의해 매년 비슷한 실태조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실태조사는 실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책 개발이 어려울 경우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년 비슷한 실태조사결과가 도출된다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감소되는 것이다. 인권실태조사 초기에는 거주시설의 인권 현실을 조사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필요성이 존재했지만, 10년 이상의 인권실태조사에 의해 비슷한 경향이 도출되었다면 실태조사가 아닌 다른 방식의 조사를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3) 구조적 학대보다는 개인의 일탈에 의한 학대에 초점을 맞춘 한계 존재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자를 중심으로 두다보니, 일반적으로 학대 유형은 학대 행태에 따라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유기로 구분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도 이와 같은 학대 행태를 나열하고 있다. 즉 학대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보니, 학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행태만 학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구조적 학대, 차별적 학대¹⁾도 존재한다(이동석 외, 2014). 이 중 구조적 학대란 부족한 서비스, 잘못된 관행, 바람직하지 않은 물리적 구조, 잘못된 법률 및 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 학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학대가해자는 특정 개인이 아닌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한 학대 피해자는 장애인 개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차별적 학대 및 제도적 학대 유형은 법적·사회적 환경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발견할 수 있는 유형으로서 개인이 경험하는 학대로 유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장애인가주시설에서 학대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거주시설의 특성, 즉 구조 및 제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거주시설에서의 학대는 학대가해자의 나쁜 행위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위치하고 있는 거주시설의 물리적 특성,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

1)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종교에 의한 차별에 따른 학대를 말한다.

어도 거주인은 외부 전문가, 가족, 친구와 고립되어 있는 현실,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 및 대응 부족 등 직원의 능력과 숙련도 부족, 거주인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하거나 타인으로 인식하는 직원의 태도와 행동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런데 인권실태조사는 거주인의 학대 피해를 조사하면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학대에 관해서는 조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10년 이상 인권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면접 조사에서는 학대에만 초점을 맞춘 실태조사보다는 거주시설의 운영 품질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조사의 목적을 바꾸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운영 품질 조사는 지자체 평가 등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인권실태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학대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유기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학대 실태까지 조사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인권실태조사는 직원 등 개인의 일탈에 의한 학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부의 사업안내에서 인권침해 유발소지가 있을 수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직원은 정부의 사업안내에 따라 이를 충실히 따르고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사업 안내를 충실히 지켰는데 그로부터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부의 사업안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업 안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즉 현재의 인권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사업안내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분석이 필요하다. 만약 오랜 관행에 따라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는 인권침해사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지도감독(또는 인권위의 조사)-정부의 후속적 조치”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2. 인권실태조사 모형 제안

4개 모형을 제시하였다.

1) 1모형: 인권침해사례 발굴 모형

〈표 1〉 1모형: 인권침해사례 발굴 모형

구분		내용
조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태조사(주) + 인권침해사례발굴(부)
조사의 범주(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권실태 조사 자립 관련 부분 포함 환경 및 운영 부분의 경우 지자체 점검 등 타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조사 수행기관(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위탁 민간단체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인 + 직원
조사 방법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담(주) + 관찰 도입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개월 정도(현재 보다 기간 증가)
	조사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별 10명 정도(현재보다 인원 축소)
	조사원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수당
	조사원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채용 교육, 보수교육 조사 중간 교육
조사결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현황보다는 전체적인 모니터링 결과 작성 시도조치(환류) 결과 보고
조사결과 활용 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거주시설에 배포 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조사 의뢰 복지부는 정책 자료로 활용 언론 보도 요청



2) 2모형: 주제별 실태조사중심 모니터링 모형

〈표 2〉 2모형: 주제별 실태조사중심 모니터링 모형

구분		내용
조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별 실태조사(주) + 인권침해사례 발굴(부)
조사의 범주(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로 기획 주제를 정해서 실태를 조사 주제 예) 불임 시술 실태, 약물복용 실태, 병원 입원 실태, 자립지원실태 등 환경 및 운영 부분의 경우 지자체 점검 등 타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조사 수행기관(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위탁 민간단체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인 + 직원
조사 방법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담(주) + 관찰 도입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개월 정도(현재 보다 기간 증가)
	조사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별 10명 정도(현재보다 인원 축소)
	조사원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수당
	조사원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채용 교육, 보수교육 조사 중간 교육
조사결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조사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작성 학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모니터링 결과 작성 시도조치(환류) 결과 보고
조사결과 활용 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거주시설에 배포 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조사 의뢰 복지부는 정책 자료로 활용 언론 보도 요청



3) 3모형: 학대·인권침해 감시중심 모니터링 모형

〈표 3〉 3모형: 학대·인권침해 감시중심 모니터링 모형

구분		내용
조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감시, 제재, 시정조치)
조사의 범주(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및 학대 중심 • 환경 및 운영 부분 축소 • 구조적 학대와 관련된 부분 조사
조사 수행기관(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복지부 역할 : 조사 총괄, 지자체 조치 관리 • 지자체 역할 : 조사 과정 및 조치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인, 직원
조사 방법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 및 관찰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연중)
	조사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당 2명 채용 (비정규직)
	조사원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급제
	조사원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옹호기관 교육으로 대체(신규 채용 교육, 보수교육) • 실습 교육 추가
조사결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현황 보다는 전체적인 모니터링 결과 작성 • 시도조치(환류) 결과 보고 • 필요 시, 연차보고서 발간
조사결과 활용 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거주시설에 배포 • 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조사의 근거로 활용 • 언론 보도 요청

4) 4모형: 학대·인권침해 컨설팅 중심 모니터링 모형

〈표 4〉 4모형: 학대·인권침해 컨설팅 중심 모니터링 모형

구분		내용
조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 예방, 컨설팅, 개선지원
조사의 범주(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중심 인권 내용 조사 (지역사회 관계 등) • 환경 및 운영 부분 제외
조사 수행기관(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위탁 민간단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포함)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인, 직원
조사 방법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 및 관찰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연중)
	조사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2명
	조사원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급제
	조사원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채용 교육, 보수교육
조사결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품질 개선을 위한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활용 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거주시설에 컨설팅 • 복지부는 정책 자료로 활용 • 언론 보도 요청

3. 2024년 조사에 따른 과제

제언은 거주시설 거주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실천적 제언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또 추후 조사와 관련된 제언도 제시하였다.

1) 정책적 제언

(1) 거주시설 이용 기간 제한 및 재심사 제도 도입

이번 조사 결과 평균 입소 기간이 12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67.9%로 거주인의 2/3 이상인 수준이다. 즉 한번 입소하면 지속적으로 거주 시설에서 거주하는 현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일반 임대주택과 자립생활주택도 임대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재심사 또는 재계약을 통해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그런데 거주시설의 경우 입소를 하면 본인이 강력히 퇴소를 원하지 않는 이상 퇴소할 길이 막혀 있다. 이에 따라 거주 시설에서의 장기 거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이용 기간을 5년 정도로 제한하고, 재평가 등을 통해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거주시설에서의 학대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거주인 대상 실태조사 결과 강제노역 1.5%, 언어폭력 6.9%, 신체적 폭력 5.5%, 격리·감금 2.8%, 방임 2.3%, 성폭력 1.9%, 강제 약물 복용 0.9% 등 학대와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또 직원 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응답은 7.4%였으며, 언어폭력(39.5%), 신체적 폭력(37.2%), 성폭력(8.5%), 방임과 유기(3.9%), 강제 약물 투여(0.8%) 등의 순이었다.

학대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학대는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기관 내에서 합의나 처벌 등으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40.2%에 달하였다. 이처럼 내부에서 해결하려고만 할 경우 인권침해는 개선되기보다 문힐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현재보다 강력한 정책, 실효적 정책이 필요하다.

가능한 대안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해당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상시 필요에 의해 거주시설을 방문하여 모니터링하고 학대 의심이 있을 경우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거주시설과 자립생활센터 매칭과 자립생활센터에 의한 지속적 자립생활 욕구 조사 및 교육 강화

거주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자립생활 욕구가 있는 사람은 26.8%였다. 하지만 자립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33.7%로 적은 수준이었고, 자립할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33.9%였다. 또 시설에서 탈시설 욕구조사,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계획 진행 등 탈시설 자립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시설에서 탈시설 자립생활 욕구 조사를 한 경우는 14.9%였고, 시설에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세운 경우는 24.6%였고, 자립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 자립 준비과정이 진행된 경우는 22.1%에 불과했다. 매년 이루어지는 조사를 통해 거주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자립생활 욕구를 조사하고,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직원의 인식이 장애인 당사자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제약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적용 대상에 관하여, 모든 거주인이 아닌 특정 조건의 거주인만이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는 직원이 16.3%~23.7% 정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자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특성으로 기능상 중증장애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질병으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장애인, 도전적 행동이 심한 장애인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거주인에 국한하여 자립을 지원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자립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직원도 18.8%로 나타났다. 또한 자립생활의 거주형태에 대하여 그룹홈(30.7%), 개별주택(27.3%)이 높았으나, 현재와 유사한 소규모 시설의 형태인 30인 미만의 소규모 거주시설에의 동의도 24.8%에 달하였다. 이 문항에 동의한 직원은 자립의 필요성에 적극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거주인의 자립생활 욕구를 조사하고,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는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다. 이에 따라 거주시설 인근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정하여, 해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를 조사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지원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자립생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인권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어 왜 인권이 중요한지, 시설 장애인에게 어떤 인권



이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인권에 관한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실천적 제언

(1) 의료서비스에 접근 강화

영유아 및 아동의 경우 개월 수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20.8%에 이르렀고, 개월 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도 4.8%였다. 또 심화평가를 권고받은 7명 중 3명은 추가 점진 여부를 모르는 상황이었다. 영유아 예방접종, 건강검진은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접종, 건강검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성인의 경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미충족율이 11.7%였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도 9.7%였다. 거주시설의 존재 이유로 의료적 욕구가 높은 장애인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주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의료보장이 잘 안 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의료보장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2) 자립을 위한 자율성 강화 지원 확대

아동·청소년이 시설 내에서도 지역에서 의사소통, 자기결정, 자기권리 옹호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12.8%, 17.4%, 12.3%였다. 결국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 자기결정, 자기옹호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성인의 경우에도 불편 사항이나 불만이 있을 경우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30.7%에 이르고 있었음에도, 현재 거주시설에서 거주인의 권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2.6%에 불과했다. 특히 시설에서 다른 거주인이나 응답자 본인이 학대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은 13.2%였다. 이처럼 거주인의 권리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자신의 권리를 말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자신의 권리에 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자기결정 보장을 위한 직원의 지원과 관련하여 거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선호에 반하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5%였으며, 그 이유로 '거주인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

여’라는 응답이 59.9%였다. 예 해당하였다. 거주인의 건강과 안전은 중요하지만, 건강과 안전만을 위하여 자기결정을 제한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또 자기결정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생각하는 ‘중점개선’ 영역은 ‘이용자에게 맞는 의사소통 도구 지원과 직원에게 의사소통역량 강화 교육 지원’, ‘시설 내 자원뿐만 아니라 외부 자원 연계와 협력’, ‘거주인의 의사를 독촉하지 않고, 경청하며, 정확히 파악하기’였다. 이 부분들은 당사자의 자기결정을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점이므로 더욱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3) 식사 지원 방법 개선

일상생활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직원의 중요도와 실행도 조사 결과, ‘중점개선’이 필요한 영역 중 하나는 ‘개인별 연령, 장애 특성, 질병, 알러지 등을 고려한 식사메뉴 제공’이었다.

또 식사 시간 관찰을 통해 짧은 시간에 식사를 마치기 위해 유동식, 다짐식, 커팅식 등의 식사를 주로 하거나 급하게 식사를 강요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거주인이 먹기 힘들어 보임에도 계속 먹도록 지원하는 경우, 수저 사용을 과격하게 하는 경우, 삼키기 전에 계속 음식을 추가하는 경우 등이다. 과도할 경우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식사 지원 시 음식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탈시설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주시설에서는 주로 죽과 같은 유동식을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원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가능할 수 있으나, 상황적으로는 명백히 인권 침해적 현상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특성에 맞게 식사 지원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권과 사생활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책상과 의자, 컴퓨터·도서·학용품, 놀이 공간, 성인과 구분된 프로그램, 혼자 있을 장소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부(학교 숙제)를 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시설에 없다는 응답도 9.5%에 이르렀다. 예와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만으로 다시 분석하면 책상과 의자가 없는 경우는 14.4%이다. 또

공부(학교 숙제)를 하거나 수업 준비물을 준비할 때 시설에서 도와주는 직원이 없다는 응답도 4.0%였고, 예와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만으로 다시 분석하면 도와주는 직원이 없는 경우가 7.5%이다. 즉 아동·청소년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원인이 부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특히 강조되는 발달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기자재, 지원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5) 도전행동에 관한 직원 대상 교육 확대

거주인에게 도전행동이 있다는 직원의 응답은 77.7%였다. 직원들은 거주인의 도전행동 발생 원인을 환경적 문제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기질적 특성이나 개인의 성격·성향 등으로 보는 응답은 42.5%에 해당하였다.

한편 도전행동에 대응하는 방식은 1순위로 '지속적으로 개별 사례관리를 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반면 타임아웃, 약물치료, 신체적 제재, 행동과 이동의 제재, 장비 사용 제지와 같은 자유권을 제한하거나 문제 가능성이 있는 방식도 9.6%에 달하였다. 도전행동에 관한 전략에 대하여 도전행동에 대한 계획 수립, 관련 매뉴얼, 대응 역량 훈련, 동의, 기록 등 각각의 응답 비율은 다중 응답임에도 최대치가 20%에 미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전략이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전행동으로 인한 신체적 개입 경험이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신체적 개입이 거주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임에도, 신체적 개입 이유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중재 방법을 몰라서 수행'하거나 '다른 행동 중재 방법을 알아도 자신이 없어서 수행'한다는 등의 응답률이 총 15.2%에 달하였다.

또 도전행동으로 인하여 약물치료가 병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58.7%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전행동으로 인한 약물 투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은(60.3%)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직원(22.6%)에 비해 2.6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전행동에 관한 오해와 잘못된 지식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주시설 직원 대상으로 도전행동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직원들도 도전행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 '도전행동 지원에 관한 직원 교육(27.0%)'을 가장 우선 시하였다.

(6)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소에 고충처리함 설치

전체 조사시설 84개소 중 14개소(16.7%)는 진정함만 설치되어 있었고, 1개소는 진정함과 함께 비치되어야 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 등이 없었으며 13개소(15.5%)는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인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충처리함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에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고충처리함이 설치되어 있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구체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3) 추후 조사 제언

(1) 정기적인 전수조사보다는 주제별 조사 또는 기획조사 방식으로의 전환

이미 10년 동안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조사 등을 통해 직원 및 거주인들이 조사에 대해 학습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주인과 직원들은 이미 질문 내용을 예상하고, 말할 답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반복적인 조사에 따라 피로감이 생기고, 조사에 둔감해지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 매년 전수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샘플링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년 정기적인 전수조사보다는 기획조사가 바람직할 수 있다. 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규모를 특정하고, 이전의 학대 발생 경험 등을 토대로 조사시설을 선정한 후에 심도 있는 조사를 실행하거나, 약물복용 등과 같이 특정 주제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탈시설 진행 과정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조사는 도전 행동과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도전 행동 대응과 관련된 심화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개입과 약물 개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부적절하게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동일하게 조사하기보다는 도전 행동에 관한 개입 방법으로써 신체적 개입과 약물 개입을 주로 살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때 조사 대상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 올해 관찰조사를 통해 식사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개별 맞춤형 관리하고 하지만 과도하게 다짐식, 커팅식, 유동식의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은 식사제공이 실제 개별 맞춤형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가 내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의 특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조리원 등에게 설문지를 별도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제한적이거나 특정 주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도출된 결과에 따라 다음 년도에는 심층적인 기획조사를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조사 결과 공개

그동안 거주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보고서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결과 및 제언 등에 대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해당 거주시설 및 면담원 등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통해 무엇이 바뀌어 지는지 등에 대해 알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할 경우 조사 참여에 동기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실제로 현장에서는 면담원과 거주인, 직원 모두 “조사하면 무엇이 달라지기는 하나?”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조사 결과 및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시설 인권 변화가 발생했음은 분명하지만, 현장에서의 체감 정도는 낮은 편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실태조사 이후 제언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제언이 얼마나 실행이 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 및 관련 보고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3) 질적 조사 추가 및 관찰조사 유지

첫째, 설문조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대상에게 질적 조사를 실시하여 이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이 어렵게라도 되지만 설문 문항은 어려울 수 있는 장애인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개방형 질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모든 문항에 대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 점, 힘든 점(학대 등), 외출, 관계, 활동 등 대표적인 부분만 확인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또 무작위 추출에 의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주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둘째, 올해 실시한 관찰조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관찰조사로 실제적인 현실에 가까운 면을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찰조사를 유지하되, 관찰의 대상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해처럼 식사를 관찰 대상으로 하되 식당 관찰조사를 확장하여 별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관찰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일부 오후 주간활동 등 프로그램 활동을 확인할 수도 있다.

주제 발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현장의 변화

한은희 전문상담사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현장의 변화

한은희 전문상담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

인권실태조사(조사팀장) 2011년 ~ 2024년 현재

I. 들어가며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2011. 12. 9일 국무총리실 '제4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보도자료)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11. 10. 28. 부터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 미신고시설 10개,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개, 특수학교 병립 시설 45개 등 200개

✓ 결과 : 시설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설치,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2011년 현재 유치원, 초·중등학교, 아동시설 등에 성범죄자 취업 제한)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사업수행기관

- ◎ 2011~20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 2019~2020 코로나19로 미시행(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대면·비대면 조사)
- ◎ 2021~202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통령 지시사항('14. 3. 18, 국무회의)〉

◇ 전국 장애인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 마련



※ 초기(2014년) 인권실태 전수조사 개요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입소자 및 종사자, 시설환경 조사)

(방법) 민·관 합동조사(지자체 공무원은 타 시·군·구 교차 조사)

* 1차 조사(4.15~5.30) 후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하여는 심층면담 추가 실시

(실태조사 준비)

■ 실태조사원(민간, 공무원) 선발(약 1천명) 및 시설별 조사팀 구성(3.31~4.11)

* 시·도 담당자, 관계기관(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인권위) 업무협조 회의(3.31)

(실태조사 인력)

■ 1,016명(지자체 공무원 440명, 민간조사원 576명)

* 민간 조사원은 장애인단체 경력 3년 이상, 장애인 인권 전문가 등으로 선발

II. 본론

1. 전문 조사원 양성 및 교육

□ 인력풀 확보

◦ 전문조사원 양성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장애인개발원) 등을 통해 전문조사원 양성교육 실시(2016년 6월)

* 교육 : 장애인인권이해, 조사기법 등의 과정으로 집합교육 실시

◦ 전문조사원 교육, 공무원 교육

□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 양성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 조사원을 모집하여 조사 매뉴얼 등 교육 후 인권실태조사 실시

◦ 모집 과정의 폐쇄성



2. 시스템 부재

- 현장 조사 시 문제점
 - 전문인력 부족 : 조사원에 대한 교육 부족 등으로 전문성 논란이 제기되고, 일시적인 조사원 모집으로 인력 부족 문제 동시 발생
 - 경찰청 합동 조사로 불편감 조성
- 실태조사의 이해 부재로 혼선 발생
 - 지나친 사명감
 - 시설 비협조
- 민간 조사원 활동에 대한 제약
 - 대상 시설과 민간 조사원 간 안면이 있는 경우
 - 특수관계(친인척, 지인, 선후배 등)
- 장총련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옹호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 면담원 자격 사항

2022 청각장애인 거주시설 - 유형별 거주시설

[자격 요건] (하단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 ①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경력 3년 이상인 자
 ※ 다만, 장애인거주시설 재직자 및 장애인거주시설 동일법인 산하 시설의 재직자 선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
- ② 인권 관련 교수, 변호사, 사회복지사로 경력 3년 이상인 자
- ③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로 경력 3년 이상인 자
- ④ 그 외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 또는 유관 업무 종사자로 경력 3년 이상인 자

[우대 사항]

- ① 수어통역 전문자격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수어통역이 가능한 자
- ② 특수교육 전공자이거나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분야 또는 유관 업무 경험자
- ③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또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유사 사업에 조사 인력으로 참여 경험 있는 자, 기타 활동 경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

〈표1. 청각장애거주시설 수어통역사 인력배치 계획 (7개소, 205명)〉

<표 11-2-1> (단위 : 명, 개소)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명	조사대상 현원			조사 일수	조사팀 구성					
				입 소 자	종 사 자	합계		팀장	일반 조사원	수어 통역 조사원	총원	남	여
1	서울	동작구	삼성농아원	28	27	55	1	1	4	4	9	5	4
2	인천	부평구	성동원	20	16	36	1	1	4	1	6	4	2
3	울산	북구	사회복지법인 메아리 (메아리동산)	21	25	46	1	1	4	3	8	5	3
4	경기	안성시	성요셉의집	28	24	52	1	1	4	3	8	4	4
5		포천시	운보원	34	23	57	1	1	6	2	9	9	0
6	충북	충주시	성심농아재활원	59	35	94	1	1	4	8	13	7	6
7	전남	여수시	여수농아원	15	8	23	1	1	2	1	4	3	1
합 계				205	158	363	7	7	28	22	57	37	20

※ ①이*화(서울 동대문구) ②오*아(서울 중랑구) ③이*란(인천) ④황*희(경기 성남) ⑤한*심(경기 안양) ⑥이*숙(경기 안성) ⑦유*희(경기 양평) ⑧한은희(경기 파주) ⑨정*호(울산) ⑩김*예(전남 강진)
 기타 : 수어통역(조사원 교육 필수)조사원의 돌발 상황 발생 시, 시설 소재지의 담당 주무 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 의뢰
 <표1.> 2022년 유형별 대상시설(청각시설)의 전문조사원 모집·배치 계획서를 한국장충에 제공한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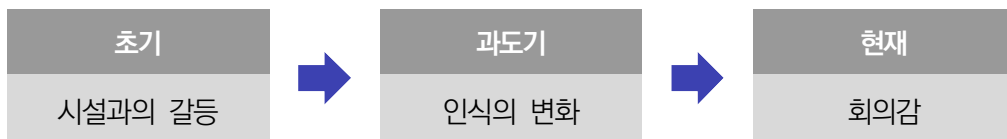


III. 마무리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2011년부터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수행하는 과정에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사업비 부족으로 면담원(당시) 수당(교통비, 식비 포함)을 지급 받지 못한 적도 있었고, 시설의 격한 거부와 비협조가 있었다. 실태조사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대상 시설은 의심 시설이라는 낙인화에 대한 반감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조사팀 구성의 변화(지자체 - 경찰청 - 민간 합동 조사)는 조사원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힘겨운 때도 있었다.

〈도입기 현장 사례〉

- 예1) 우리 사이에...
- 예2) 조사원에게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제기
- 예3) 전문성 의심
- 예4) 무슨 근거로...
- 예5) 조사 거부, 종사자 도망, 연락 두절
- 예6) 시설과 조사원 간 다툼
- 예7) 기타(훈내기, 훈계하기, 강의하기)



『전문조사원 ➡ 전문면담원 ➡ 전문조사원』: 과도기적 상황을 겪으면서 호칭의 변화만큼 실태조사 감수성의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순간 실태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차츰 바뀌게 되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시설 측의 기계적인 응대, 조사원들 또한 실태조사 감수성이 무뎌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과도기를 지나 시스템의 체계화, 매뉴얼의 고도화로 안정기에 들었으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현장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



2024년 조사 결과보고서 中

그동안 거주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보고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결과 및 제언 등에 대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해당 거주시설 및 면담원 등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통해 무엇이 바뀌어지는지 등에 대해 알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할 경우 조사 참여에 동기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실제로 현장에서는 면담원과 거주인, 직원 모두 “조사하면 무엇이 달라지기는 하나?”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조사 결과 및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주제 발표

‘202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참여 경험과 고민

김종미 사무처장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참여 경험과 고민

김종미 사무처장(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회에서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본격적인 적용에 의한 장애 인권에 대한 강조 흐름과 지난 201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의 인화학교 사건을 비롯 해 여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이후, 복지부는 지난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 신설 △ 인권 침해 발생 시설 이력 관리 △ 인권지킴이단 운영 △ 이용인 및 종사자 인권교육의 강화 등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역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보호와 시설 운영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하나이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사) 한국장애인총연맹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 단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발표자는 지난 2012년부터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조사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의 장총련이 주관한 인권실태조사에서는 2022년에는 조사원으로 참여하며 거주인과 종사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조사팀장으로 참여하여 인권실태조사 및 시설 환경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광주지역 인권실태조사 참여 경험과 조사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인권실태조사의 한계와 고민점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2024년 인권실태조사 참여 경험

[표-1, 광주광역시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23. 12월 기준)]

구분	시설 유형			
	계	거주시설	단기거주	공동생활
시설수	91	24	4	51
이용인	990	670	57	203
종사자	1,043	608	37	53

〈출처 :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현재 광주시에는 총 24개의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인은 670여명 정도입니다. 이중 이용인들을 장애유형으로 구분하면, 지적·자폐성장애 76%, 지체장애 8.4%, 뇌병변장애 6.9%, 시각장애 5.8% 순으로 나타납니다.

올해 인권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총 11명의 조사원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10개 장애인 거주시설(지적장애 7개소, 지체·뇌병변장애 2개소, 시각장애 1개소)의 이용인 203명, 종사자 184명 등 총 387명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원들의 인권실태조사 참여 후 의견

- 위의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의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인데, 특히 올해는 인권실태조사에 해당하는 거주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이용인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응답 불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닌 발달장애인의 이해와 의사소통을 위해 그림도구 조사표를 활용하였으나 기존의 그림도구 조사표의 경우 면담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AAC가 탑재되어있는 테블릿이나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하여 조사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처럼 면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2024년에는 새롭게 관찰조사가 도입되었고, 관찰조사

표를 가지고 직접 거주인분들의 식사시간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관찰조사의 장점으로는 이용인들의 시설 내 생활에서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식사지원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 이를 토대로 종사자들이 이용인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찰조사를 실시한다고 연락을 받았기에 좀 더 식단과 지원 방식에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라는 조사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관찰조사의 영역이 식사 지원에 그쳐 이용인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살피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10년 넘게 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본 조사에 대한 조사원과 종사자들의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간격이 여전히 크다는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는 것처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목적은 해당 시설에 대한 평가나 지적을 하기 위함이 아닌, 바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의 '인권 증진' 입니다.

이를 위해 거주시설의 종사자, 이용인 면담을 실시하여 시설의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는 것이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시설 이용인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몇몇 시설의 경우,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오해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조사에 비협조나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조사원들의 경우에도 조사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조사보다는 해당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태도를 보여 시설과의 마찰이나 추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전문적이고 철저한 조사원 교육 및 선발 과정과, 거주시설의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효과적인 인권실태조사 및 이용인 인권증진을 위한 고민

-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용인의 장애적 특성으로 인한 생활환경과 이용인들과의 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외부의 조사원들이 현재 방식의 설문 조사 위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시설의 종사자 역시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용인의 특성에 대해 잘 알지도 못 하는 외부인이 단 시간의 설문과 조사만으로 어떻게 알 수 있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답변을 가지고 문제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지도점검이나 평가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10여년 전부터 인권지킴이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본 인권실태조사의 조사원보다 해당 시설과 이용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인권지킴이단 중 외부 단원이 정례적으로 이용인 인권상황점검과 회의를 통해 인권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권지킴이단 역시 외부 단원 위축의 어려움 등 여러 이유로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외부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시설의 이용 환경이나 이용인의 인권에 대한 부분을 살피는 기회가 여전히 필요하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비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인권실태조사의 정례적인 실시 등으로 인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 환경이나 종사자와 이용인들의 인권의식 등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의 인권실태조사의 설문 및 관찰 항목/영역의 내용이 현재의 흐름과 상황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이용인의 생활환경과 생존권, 자유권,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을 살피는 것은 무척 중요하지만, 현재의 방식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이용인에게 실제로 어떻게 보장되고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야기한 실태조사 방식의 한계로 인한 허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잇을 만하면 발생하는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이 그 반증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사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인의 전반적인 인권보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입소형태, 거주환경, 의료서비스, 법률행위 권리, 개인의 자유 및 안전권리 보장, 처벌·폭력·학대 유무 등을 포함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와 후속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발표를 마치며

지난 10년 동안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하면서, 이용인들의 입장과 종사자의 입장을 두루 살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거주시설의 종사자들은 시설의 소규모화로 인한 종사자의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으로 효과적인 이용인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이용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종사자의 인권도 생각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이를 위한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이용인의 관점에서는 종사자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이용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권고에 따라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개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시설 이용인들의 인권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자유권, 생명권,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과 인권보장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무척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용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는 알지만, 이러한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많아지고, 이용인들의 인권과, 시설에서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주제 발표

2024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진행사례

정한별 팀장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4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진행사례

정한별 팀장(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는 2024년,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관한 최초의 조사였습니다. 이번에 수행한 사업의 이름은 “2024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개요

○ 추진근거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침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배경 및 목적

- 경기도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 사례 증가
: 2023년 경기도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768건(경기남부 450건, 경기북부 318건), 경남 209건, 부산 196건, 서울 195건 / 전국 2,969건
: 2023년 경기도 집단이용시설(장애인가주시설, 교육기관,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장애인학대 판정사례 163건(42.3%), 전국 385건
- 장애인가주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도구개발 및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증진에 기여

○ 사업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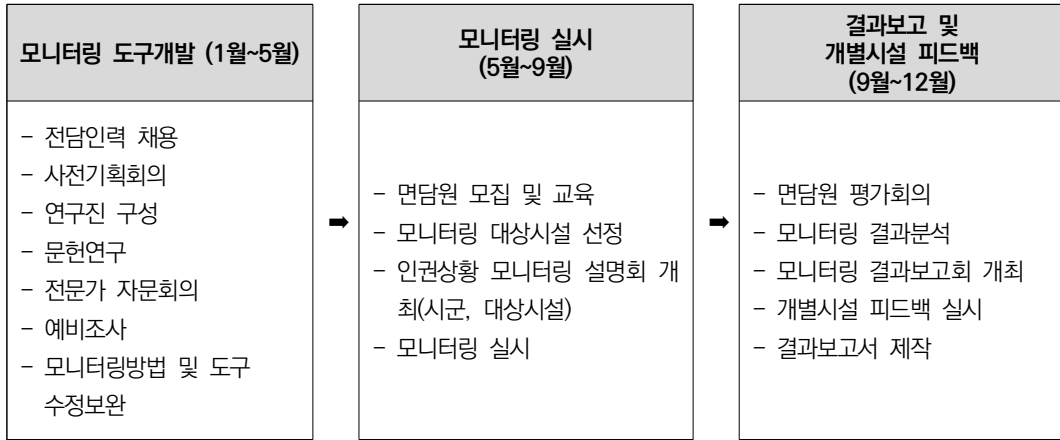
경기도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상황 모니터링 운영총괄 - 경기도 시군담당부서 협조요청 - 시설방문 면담원 신분보장 - 모니터링 결과 시군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상황 모니터링 실행총괄 - 인권상황 모니터링 도구개발 - 모니터링 도구활용 및 방문지침 매뉴얼 제작 - 면담원 모집 및 교육 - 방문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보고회 개최 - 시설별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시설 사전 통지 - 모니터링 동행 - 문서검토 및 환경점검 - 긴급상황 조치 - 모니터링 결과 시설통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가주시설모니터링 참여 협조 요청 - 인권상황모니터링 사업지원 - 보고회 참여 및 의견개진

○ 모니터링 대상

-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가주시설 52개소 중 16개소



○ 모니터링 추진절차



2. 모니터링 방법 및 과정

가. 인권상황 모니터링 도구개발

- 전담인력 1인 채용
- 연구진 구성
- CRPD 기반 5가지 권리, 21개 표준, 92개 세부기준으로 모니터링 지표구성
- 5가지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28조), 신체적·정신적 건강(25조), 법적능력 행사·개인의 자유 및 신체의 안전(12조,14조), 차별·착취·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15조,16조), 독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19조)
- 전문가 자문회의 후 지표에 대한 의견수렴, 예비조사 후 최종 지표 수정 보완실시
- 인권상황 모니터링 매뉴얼 제작

나. 면담원 모집 및 교육

- 선발원칙: 성별고려, 특정단체 및 기관 편중 지양, 모니터링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관련자 제외, 장애 및 인권 등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 / 26명 면담원 활동



- 면담원 교육: 2일 실시
- 면담원 교육의 내용: 모니터링 사업의 이해 및 각 지표의 이해와 모니터링 방법 학습,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면담팀장 역할교육 별도 진행

다. 모니터링 대상시설 선정

-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총 52개소 중, 경기도 권역별(5개), 도시와 농촌, 시설의 설립기간, 시설의 규모(30인,60인)를 고려하여 비례할당 표집 실시 후 모니터링에 동의한 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총 16개소 시설 대상시설로 선정

라. 모니터링 실시

- 대상시설 16개소 중 15개 시설 모니터링 진행
- 모니터링 팀: 면담팀장 1인, 면담원 5인 ~ 10인, 옹호기관 담당자 1인~2인, 시군시설담당자 1인 / 성별과 소속 고려하여 면담팀 구성
- 모니터링 방법(9:00~17:00): 이용인 면담 및 종사자 면담, 대상시설 일상 참여 관찰, 서류 검토 실시
- 평가회의 진행 후 모니터링 종료(18:00)
- 모니터링 결과 학대의심사례 발견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의심 건 접수 후 현장조사 실시

마. 결과보고 및 개별시설 피드백

- 면담원 평가회의 실시 및 평가의견 향후 모니터링에 반영
- 모니터링 결과분석: 양적분석(4점 척도) 및 질적분석 실시
-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연구진 중간분석 결과 발제, 모니터링 대상 시설장, 면담팀장, 전문 연구자 참여하여 의견 수렴
- 최종결과보고서 작성중



- 개별시설 결과 피드백: 모니터링 참여 전체시설과 각 개별 시설의 모니터링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분석 결과 각 시설별로 제공 예정, 해당 시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안사항 제시

3. 향후 사업계획

- 최종보고서 제작 및 배포 예정
- 2024년 실시한 모니터링은 시범사업의 성격
- 2025년 계속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 경기도와 논의 중
- 2024년 사업 평가 내용 및 모니터링 결과분석 내용을 반영한 2025년 계획 수립 및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예정



장애인 인권과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역할

김강원 부센터장(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

1.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에 관해 가졌던 문제인식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관해, 반복되는 비슷한 내용의 실태조사로 인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무의미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말아 실제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며 조사 이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인권침해 사실이 제보 되어도 심층 조사나 이후의 법적인 조치들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대체 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조사를 위한 조사 내지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를 면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조사는 그러한 문제인식을 반영하여 기획된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이용자와 종사자의 피로도와 반복된 질문으로 인한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다른 조사와의 중복 문항을 제외하고, 조사 대상도 2021년 100인 이상 대형시설, 2022년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2023년 중증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및 단기거주시설, 그리고 2024년 소규모 시설 및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로 매년 달리하면서, 반복(중복)조사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른 합의와 개선 방안, 또 조사원으로 직접 참여하며 가졌던 문제인식과 제언들 등 다른 발제와 토론자께서 나누신 내용들은 토론자가 굳이 말을 보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적절하고 충실한 환류가 아닌가 싶다. 특히 이동석 교수님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권실태조사 모형에 관한 제안은 토론자가 평소 가졌던 생각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싶다.



2.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목적성을 가진 기획된 조사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기획된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의 기획조사가 필요하다. 강제불임시술 실태조사와 같은 특정주제에 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과 여아의 강제 불임과 동의없는 임신 중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관련 정보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장애인가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라고 답했을 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강제)불임시술 실태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조사의 목적에 따라 1)인권 전반을 모니터링, 2)학대 등 인권침해 사건 발굴, 3)특정 주제에 대한 기획 조사(예컨대, CCTV 설치 운영 실태조사, 선거권 보장실태조사 등) 등으로 조사의 컨셉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고 매년 그때 그때 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5개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3. 실태조사가 시설 내 인권문제를 비가시화 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시설 내 인권문제가 꿀을대로 꿀았다가 옹기있는 제보자나 내부고발자에 의해 외부로 노출되고, 자극적인 소재로서 언론을 통해 소비되면서 장애인 인권단체나 부모단체들의 시정점거 등의 총력 투쟁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거나 지자체장이 시설폐쇄를 결정하던 소위 ‘시설 싸움’을 하던 과거의 분위기와 달리, 전문기관이 설립되고 매년 인권실태조사도 실시하면서 마치 현재는 장애인시설의 인권문제가 전보다 나아졌거나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착시효과가 생겨난 듯하다.

또 예산 확대와 기능보강 등을 통해 시설의 물리적 환경(위생이나 시설, 식단 등)이 나아지면서 겉보기로는 그럴 듯 하고 환경이 쾌적해 보이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시설이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고, 많이 나아졌으며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문제 있는 시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인권침해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일탈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만연한 것 같다.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탈시설 지원조례가 폐지되고 시설 지



원 예산을 늘리는 등 정책적으로도 그러한 착시효과가 반영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로서 업무의 하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측에서는 외부의 자극 없이 자체적으로 문제 인식을 갖기란 어려우며 오히려 시설 종사자들의 고충을 호소할 따름이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인권지킴이단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오히려 시설내 인권침해를 무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오래된 문제 제기는 이제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동의 없이, 심지어 서명을 위조하여 거주인 재산관리를 한다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부족, 영유아 예방접종 미 실시, 자기결정권 침해, 생활 통제, 교육 부재, 선거권 미 보장, 약물 남용 등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인권문제임에도 그러한 사례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한 조사결과가 공개도 되지 않고,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도 없이 그냥 넘어가고 만다면 과연 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제노역이나 언어적, 신체적 폭력, 감금, 성폭력 등이 보고되었고,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응답은 7.4%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 내 인권 문제가 '이제는 시설도 예전과 달리 상당히 나아졌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적절히 보고되고 조치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신고의무자인 시설 종사자들이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가? 나아가 이번 인권실태조사로 인해 드러난 인권침해와 학대사건은 적절히 보고되고 조치되고 있는가? 이 점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4. 제언

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방향성 - 탈시설

시설인권실태조사의 방향이 탈시설이라니 부자연스러운 조합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탈시설 운동과 탈시설 논의가 거센 반발과 의도적인 외면으로 위축되고 있는 이 때에 탈시설을 위한 시설조사라는 주장은 많은 반대와 반감이 예상되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설은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포함한 인권 보장과 지역사회와의 통합(Inclusion)없이 시설은 존재할 이유도 존립할 근거도 없다. 주거서비스의 한 형태라거나, 시설을 선택할 권리, 시설 주도의 탈시설 등 시설측의 주장도 결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협약상의 원칙인 탈시설 이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탈시설이라는

용어 자체에 반감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가입국인 대한민국이 탈시설을 부정한다는 것은 협약, 나아가 헌법을 쓰레기통에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탈시설 맥락에서 디자인 되어야 한다. 토론자가 뜻하는 탈 시설이란 시설을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일거에 폐쇄하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설화’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자립지원, 그리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들여다 봐야 하며 다양한 주거의 한 형태로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면 그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실태조사 이후의 조치 필요

반복된 주장이지만 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가 의미를 가지려면 무엇을 위해, 왜 실태조사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시설내 인권실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라면, 그냥 궁금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를 가지고 실제 거주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주 시설 정책이나 지침 개선에 조사 결과를 활용해야 하고, 개별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도 감독이나 컨설팅,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요구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도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또 발견된 학대(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층 재조사와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연계하여 학대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법적 조치와 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실태조사를 통해 학대 사실을 직접 밝혀 내거나 조사원이나 조사 수행주체가 직접 조치를 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관할 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고 하다못해 제보자에게 신고 방법을 안내하거나 직접 신고접수를 돕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3) 나가며 - 연속성을 갖고 매년 발전하는 실태조사가 되길

장애인시설인권실태조사라는 누구라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과업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장총에 경의를 표하며,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조사를 위한 조사가 되지 않고 매년 적절한 환류를 통해 개선되고 발전하는 실태조사가 되길 기원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emo

A large, rounded rectangular area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memo

A large rounded rectangular area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memo

A large, rounded rectangular area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memo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성과와 과제 세미나

발행일 : 2024년 12월 10일 발행

발행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01호

전화 : 02-783-0067

팩스 : 02-783-0069

이메일 : mail@kofdo.kr

홈페이지 : www.kofdo.kr

ISBN 978-89-5983-349-8

